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-105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마포구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와 수탁기관에 대한 주기적 관리·감독 실시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운영에서 수당 지급대상 제외 조항 신설(안 제7조)
- 나. 위원회 구성·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위원 회피 강행 규정화(안 제8조)
- 다. 수탁기관 주기적 지도·감독(감사) 규정 의무화: 연 1회 이상(안 제18조)
- 라. 경과규정 마련(안 부칙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: 2025. 7. 10.~2025. 7. 30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**구청장**”을 “**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**(이하 “**구청장**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**”을 “**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**”로 한다.

제7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**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** 지금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7조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
2.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

제8조제3항 중 “**회피할 수 있다**”를 “**회피하여야 한다**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**선정 할**”을 “**선정할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**”를 “**위원회**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**수행에**”를 “**처리와 관련하여**”로, “**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지도·점검에 필요한 서류, 시설 등을 검사하게**”를 “**보고하게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

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의”를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”을 “관하여 필요한”으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지도·점검에 필요한 서류,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8조제2항의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민간위탁”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, 규칙에 규정된 <u>구청장</u> 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 2. ~ 5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 2. ~ 5. (현행과 같음)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<u>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</u> 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② (생략)	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</u> 할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) ① ~ ④ (생략)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u>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</u>	제7조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 대</u>

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제11조(수탁기관 선정) ①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10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18조(지도·점검 등)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지도·점검에 필요한 서류, 시설 등

상에서 제외한다.

1.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

2.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

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회피
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탁기관 선정) ① -----
----- 선정할 -----

--.

② -----

----- 위원회 -----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지도·점검 등) ① -----
----- 처리와
관련하여 -- 보고하게 -----

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 및 지도·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되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-----.

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지도·점검에 필요한 서류,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③ -----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-----

-----.

④ ----- 제3항-----

-----.

⑤ ----- 관하여 필요한 -----
-----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수탁기관의 지도·점검 수행을 의무화하는 것으로
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재정관리국 예산정책과 윤동화
연 락 처	02-3153-8072